

의안번호	2210727
의 퇴 인	장경태의원
회 답 일	2025.7.10.
추계번호	25D3102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정원 62명 가정, 총 530억 800만원(연평균 106억 100만원)
 - (시나리오2) 정원 123명 가정, 총 1,060억 2,300만원(연평균 212억 500만원)
 - (시나리오3) 정원 185명 가정, 총 1,590억 1,700만원(연평균 318억 3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정원 62명)	10,360	10,286	10,533	10,785	11,044	53,008	10,601
시나리오2 (정원 123명)	20,729	20,571	21,064	21,570	22,089	106,023	21,205
시나리오3 (정원 185명)	31,074	30,857	31,597	32,356	33,133	159,017	31,803

주: 본 추계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직규모를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대비 25%(시나리오1), 50%(시나리오2), 75%(시나리오3)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직급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	의무규정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의무규정
3	안 제5조(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제1항), 추천위원회는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2조(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음. 다만, 수사민주화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재량규정 의무규정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만, 수사민주화 소위원회에는 국민주권 전문위원회와 수사정보공개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함	재량규정 의무규정
5	안 제16조(자문기구)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7조(사무처)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제1항),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제2항)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제3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대통령,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각각 임명함(제4항)	의무규정
7	안 제22조(청문회)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의무규정
8	안 제25조(국가수사심의위원회)	각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수사위원회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제1항),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부칙 제3조(최초 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상임위원은 2년임기 2명(위원장 포함), 3년임기 2명으로 각각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2년임기 3명, 3년임기 4명으로 각각 임명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3	안 제5조(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 위원회)	○	
4	안 제12조(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	
5	안 제16조(자문기구)	○	
6	안 제17조(사무처)	○	
7	안 제22조(청문회)	○	
8	안 제25조(국가수사심의위원회)	○	
9	안 부칙 제3조(최초 위원의 임기)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조직을 참고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법률체계, 그 입법목적(수사절차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 상임위원의 직급과 인원, 위원회 소관 업무(수사정책 연구,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사권 조정 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 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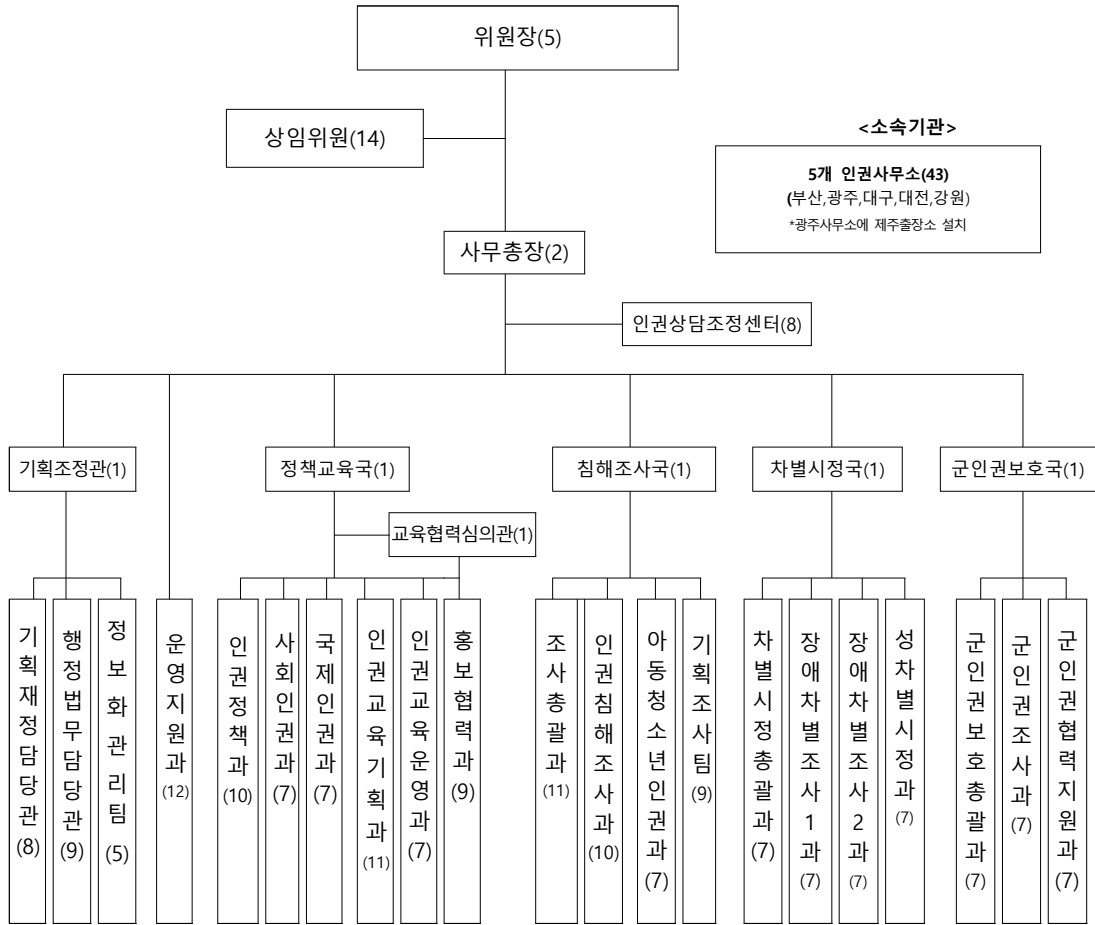
[표 2] 유사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비교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안)
근거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속	대통령	대통령	—	국무총리
지위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안)
권한	국무회의 출석·발언/ 총리의안 제출 건의/ 국회출석·의견진술	국무회의 출석·발언/ 총리의안 제출 건의/ 국회출석·의견진술	국무회의 출석·발언/ 총리의안 제출 건의/ 국회출석·의견진술	국무회의 출석·발언/ 총리의안 제출 건의/ 국회출석·의견진술
위원구성	5명 대통령지명·임명 (2) 국회추천·대통령임명 (3)	21명 대통령지명·임명 (5/상임1) 국회추천·대통령임명 (9/상임2) 교육부차관(1) 교육감협의체 대표자(1) 교원단체 추천(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각1, 총3)	11명 대통령지명·임명 (4/상임1) 국회선출·대통령임명 (4/상임2) 대법원장지명·대통령 임명(3)	11명 대통령지명·임명 (4/상임1) 국회선출·대통령임명 (4/상임2)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대통령임명(3)
위원장	1명 (장관급)	1명 (장관급)	1명 (장관급)	1명 (장관급)
부위원장	1명 (차관급)	—	—	—
상임위원	3명 (차관급)	2명 (차관급)	3명 (차관급)	3명 (차관급)
비상임위원	—	18명 (86%)	7명 (63%)	7명 (63%)
위원임기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의사(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분과위 등	—	전문위 3, 국민참여위 1	소위 6, 전문위 12	상임위, 소위, 전문위
사무기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가급)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나급)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가급)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가급)
하부조직	3국 3관 19과 4팀	1국 3과	4국 2관 20과	하위법령 위임
소속기관	방송통신사무소 4개 (지역분소 3개 포함)	—	지역 인권사무소 5개	—
정원	283명 (본부 239, 소속 44)	36명 (본부)	246명 (본부 203, 소속 43)	사위법령 위임
2025년 예산 (일반회계, 백만원)	48,738	10,342	42,414	—
인건비	25,407	3,262	21,864	—
기본경비	3,563	2,463	10,131	—
사업비	19,768	4,617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10,419	—

자료: 각 기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그림 1]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수사위원회의 소관업무의 범위, 조사 및 조정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직규모는 국가인권위원회(정원 246명)의 25%(원 62명), 50%(정원 123명), 75%(정원 185명) 수준으로 가정함

-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 국가수사위원회: 수사기관 간 수사 협의·조정, 수사심의신청 조사

□ 본 추계에서 국가수사위원회의 인건비는 2025년 예산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고, 기본 경비와 사업비는 인건비 대비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며, 자산취득비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정함¹⁾

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 (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기본경비)에는 청사 임차료(25억 6,174만원)와 관리비(15억 3,439만원)가 편성되어 있음
- 본 추계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청사는 임차하지 않고 국가기관 소유의 유휴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국가수사위원회의 인건비는 2025년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건비에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기준 예산액과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와 사업비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3] 국가인권위원회 예산내역: 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인건비 대비 비중	합계
인건비	21,864	—	38,318
기본경비	6,035	27.60%	
사업비	10,419	47.65%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경비(101억 3,100만원)에서 청사 임차료와 관리비(40억 9,600만원)를 제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출자료와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대비 25%(시나리오1, 62명), 50%(시나리오2, 123명), 75%(시나리오3, 185명) 수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	5,080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국가수사위원회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건비	시나리오1 (정원 62명)	5,732	5,869	6,010	6,154	6,302	30,067
	시나리오2 (정원 123명)	11,463	11,738	12,020	12,308	12,604	60,133
	시나리오3 (정원 185명)	17,195	17,607	18,030	18,463	18,906	90,2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본경비 및 사업비

- 국가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27.60%)과 사업비 비중(47.65%)을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연도별 인건비에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한 국가수사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국가수사위원회 기본경비와 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경비	시나리오1 (정원 62명)	1,582	1,620	1,659	1,699	1,739	8,299
	시나리오2 (정원 123명)	3,164	3,240	3,317	3,397	3,479	16,597
	시나리오3 (정원 185명)	4,746	4,860	4,976	5,096	5,218	24,896
사업비	시나리오1 (정원 62명)	2,731	2,797	2,864	2,932	3,003	14,327
	시나리오2 (정원 123명)	5,462	5,593	5,727	5,865	6,006	28,653
	시나리오3 (정원 185명)	8,193	8,390	8,591	8,797	9,009	42,9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자산취득비

- 국가수사위원회의 자산취득비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정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첫해(2027년)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국가수사위원회 자산취득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자산 취득비	시나리오1 (정원 62명)	315	-	-	-	-	315
	시나리오2 (정원 123명)	640	-	-	-	-	640
	시나리오3 (정원 185명)	940	-	-	-	-	9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정원 62명 가정, 총 530억 800만원(연평균 106억 100만원)
 - (시나리오2) 정원 123명 가정, 총 1,060억 2,300만원(연평균 212억 500만원)
 - (시나리오3) 정원 185명 가정, 총 1,590억 1,700만원(연평균 318억 300만원)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정원 62명)	인건비	5,732	5,869	6,010	6,154	6,302	30,067	-
	기본경비	1,582	1,620	1,659	1,699	1,739	8,299	-
	사업비	2,731	2,797	2,864	2,932	3,003	14,327	-
	자산취득비	315	-	-	-	-	315	-
	소계	10,360	10,286	10,533	10,785	11,044	53,008	10,601
시나리오2 (정원 123명)	인건비	11,463	11,738	12,020	12,308	12,604	60,133	-
	기본경비	3,164	3,240	3,317	3,397	3,479	16,597	-
	사업비	5,462	5,593	5,727	5,865	6,006	28,653	-
	자산취득비	640	-	-	-	-	640	-
	소계	20,729	20,571	21,064	21,570	22,089	106,023	21,205
시나리오3 (정원 185명)	인건비	17,195	17,607	18,030	18,463	18,906	90,201	-
	기본경비	4,746	4,860	4,976	5,096	5,218	24,896	-
	사업비	8,193	8,390	8,591	8,797	9,009	42,980	-
	자산취득비	940	-	-	-	-	940	-
	소계	31,074	30,857	31,597	32,356	33,133	159,017	31,803

주: 본 추계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직규모를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대비 25%(시나리오1), 50%(시나리오2), 75%(시나리오3)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직급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직규모를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대비 25%, 50%, 75%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